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01 호
----------	---------

제출년월일 : 1999.12.1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사유

- 납골당이란 명칭이 혐오감을주는명칭으로서 이를 변경하여 이미지개선과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함

2. 주요골자

- 가) 납골당의 명칭변경(제명)
 - 당초 :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 변경 : 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
- 나) 유골봉안기간연장 변경(안 제7조)
- 다)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납골당 명칭변경 제안및선정사항
- 입법예고 :예고('99.11. 9 ~ 11.28)

4.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고성군공설납골당”을 “고성군영생의집”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고성군 납골당”을 “고성군 영생의 집”으로 하고 “납골당”을 “영생의 집”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납골당”을 “영생의집”으로 한다.

제4조 “납골당”을 “영생의집”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납골당”을 “영생의집”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10년”을 “15년”으로 하고 “매년3년간씩의 기간으로”를 “15년단위로” 한다

제10조 제목“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료”로하고 제1항중“관리비”를 삭제하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원)

구분	기준	사용기간	사용료	
			관내	관외
유연고 유골	1구당	15년 (15년단위로연장가능)	100,000	200,000
무연고 유골	1구당	10년	75,000	150,000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